

「2019 찾아가는 복지 서울」 시·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

서울시 복지분야 역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성과 제고와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동협력사업을 시행코자 함

I 추진근거 및 경과

□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
- '19년 시·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(자치행정과-2167호, '19.1.29)

□ 추진경과

- '19년 복지정책실 공동협력사업(찾아가는 복지 서울) 신청 : '19. 2. 12
- 공동협력사업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: '19. 2월
-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사전 심의 : '19. 2. 22
 - 주요의견 : 목표점수·지표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, 실행 대비 효과성이 크지 않아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일부 지표는 삭제 필요
-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: '19. 3. 6
 - 복지정책실 공동협력사업으로 '2019년 찾아가는 복지 서울' 최종 선정(3.19)
 - ※ 사업비는 9억원('18년 대비 2억원 감소)
- 복지정책실 시·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설명회 개최 : '19. 3. 22

< 자치구 설명회 개최 >

- ▶ 일 시 : '19. 3. 22(금) 16:00 ~ 17:30
- ▶ 장 소 : 시청 본관 지하2층 새콤방
- ▶ 참 석 자 : 市 지표담당, 區 공동협력사업 담당자
- ▶ 주요내용 : 평가지표 세부 설명, 질의응답 등 :



II

평가계획

추진방향

- ◆ **자치구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평가지표(14개) 확정**
 - 돌봄복지 등 2개 분야, 복지시책추진 참여도 등 14개 지표(복지정책실내 6개 부서)
 - 지표 중 일부는 평가항목선택제를 실시, 구별 여건 차이를 반영·공정성 제고
- ◆ **사업 실행에 대한 자치구 부담을 경감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완화된 수준으로 평가 추진**
 - 목표점수 76점(전년과 동일), 일부 지표 배점간격 간소화(6단계 이상 → 3단계)

□ 평가개요

- 평가기간 : 2018. 10. 1 ~ 2019. 9. 30. ※ 일부 지표는 상이
- 평가시기 : 2019. 10 ~ 11월
- 지원예산 : **900백만원**
 - ※ '19년 자치행정과 공동협력사업 12개 사업 총사업비 74억원('18년 11개 사업, 80억원)
- 평가방식 : 순위에 상관없이 **목표점수(76점) 초과한 區 사업비 균등 지급**
 - ※ '18년 결과 : 목표점수 초과한 23개 자치구에 사업비(11억원)을 1/23으로 균등 지급
- 평가항목 : 2개 분야 7개 항목 14개 세부지표, 총 100점

분 야	담당부서	세부지표명
돌봄복지 (39점)	복지정책과	① 복지 시책추진 참여도(11점) ②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(7점) ③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(2점)
	지역돌봄복지과 (자치행정과)	④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복지기능 강화(10점) ⑤ 위기가정 지원(5점) ⑥ 푸드뱅크/마켓 활성화(4점)
	어르신복지과	⑦ 요양기관 확충 및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(7점) ⑧ 어르신 인권지킴이 운영(2점)
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(61점)	인생이모작지원과	⑨ 어르신일자리 창출(13점) ⑩ 주민 개방형 특화경로당 운영실적(7점)
	장애인복지정책과	⑪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(10점) ⑫ 장애인 일자리 창출(7점)
	장애인자립지원과	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(12점)
		⑭ 중증장애인 지원(3점)

□ '19년 주요 변경사항

구 분	지표명(지표내용)	비고(사유)
지표 삭제 (2)	- 푸드뱅크마켓 사례관리실적(지역돌봄복지과) - 민간시설 무장애건물(장애인자립지원과)	실적관리의 어려움 및 실행노력도 대비 사업성취 효율성이 낮음
지표 추가 (2)	-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유지(어르신복지과) - 장애인편의시설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률(장애인자립지원과)	어르신, 장애인 관련 인프라 확충·강화를 위해 필요
만점기준 하향 및 배점척도 완화(5)	-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실적(복지정책과)	만점기준 하향(90%이상 → 75% 이상)
	- 법인·시설관리시스템 자료등록 실적(복지정책과)	배점척도 축소(9개 → 3개)
	-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(복지정책과)	만점기준 하향(200명이상 → 150명 이상)
	- 사회복지인력 전문성,안정성 강화(지역돌봄복지과)	만점기준 하향(75%이상 → 60% 이상)
	-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율(장애인복지정책과)	만점기준 하향(3%이상 → 2% 이상)

□ 평가절차



○ 평가계획 수립(복지정책과)

- 평가지표 및 방법, 평가절차 등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확정

○ 시행계획 수립(자치정책과)

- 사업별 예산 및 최종 평가지표 확정,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 계획 통보

○ 우수 자치구 선정을 위한 평가 추진(복지정책과)

- 1·2차(지표담당자, 총괄부서 실무평가) → 3차(평가위원회) 단계별로 심의
- 평가위원회는 내·외부위원 포함하여 구성, 평가결과 검토·우수구 최종 선정

□ 수상구 선정

- 선정대상 : 목표점수(76점)를 초과 달성한 모든 자치구
- 수상혜택 : 복지정책실 공동협력사업 지원금(9억)을 1/N으로 균등 지급
 - ※ 단, 사업비가 수상구 수로 동일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,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

<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>

- ▶ 교부된 사업비는 평가 대상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
- ▶ 공동협력사업 추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총 사업비 30%이내에서 포상금, 직원 워크숍 등 경상적 경비로의 사용 가능

Ⅲ

추진일정

- 복지정책실 평가계획 수립 및 송부(자치행정과) : 3. 27限
- 평가지표 자치구 배포(자치행정과) : 3월말
- 사업 추진(자치구) : 4 ~ 9월
- 자치구 평가자료 수합, 실무평가(복지정책실) : 10월
- 평가위원회 심의 및 수상자치구 선정(복지정책과) : 11월
- 수상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 지급(자치행정과) : 12월

붙임 : 1. 평가지표 총괄표 1부

2. 세부지표별 자치구 설명자료(평가지 제출양식) 1부